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3.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농협유통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593)	(주)농협유통은 200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상품재고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인 상품재고조사업무에 종사시키고, 2000. 1. 1~9. 30 기간 중 직매입거래형태의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상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12개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p>◎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17백만 원</p>

2001. 3. 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1406)	(사)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운영, 구단운영 및 선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대면계약, 보류기간의 종료, 선수계약의 양도·사전합의, 자유계약선수 자격취득조건 및 구단당 획득선수의 수와 관련한 규정을 통하여 프로야구 선수 공급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인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	<p>◎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30조(대면계약), 제55조(보류기간의 종료), 제86조(선수계약의 양도), 제87조(사전합의), 제164조(자격취득조건) 및 제172조(구단당 획득선수의 수)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2001. 3. 1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SK(주) 및 SK글로벌(주)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SK글로벌(주)는 (주)크릭스와 1998. 5. 1. 자동제차기용 세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 자신의 직영주유소에 필요	◎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한 건 (2000독관0606)	한 자동세차기용 세제를 구매하여 오던 중, 2000. 2. 14.자로 세제품질테스트 및 세제선정업무를 계열회사인 SK(주)로 이관하였고, SK(주)는 2000. 3. 2. 「세제/왁스 지원방안 변경 통보」 공문을 작성하여 SK글로벌(주)의 전 지사장 및 지원팀장에게 발송하여 시행함에 따라, SK글로벌(주)는 (주)크릭스와 계약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여 (주)크릭스의 거래처 전환 및 신규 수요처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3.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세라젠티의 사업 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2000경축1096)	(주)세라젠티의 1999. 11. 25.자로 (주)미건의료기의 대리점들에게 발송한 '온열치료기 사업의 실태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및 1999. 12. 6.자 자사소식지인 세라젠티소식지 제8호에 '사실경위서'란 제목으로 게재한 글, 2000. 2. 17.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주)세라젠티의료기를 사랑하는 고객 및 사법관계기관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 등에 경쟁사업자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심인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한 내용을 유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2001. 3.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지식발전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전보096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엠파스(검색엔진)를 신문, 지하철광고지 및 전단지 등을 통해 "yahoo에서도 못 찾으면 ... empas" 라는 표제하에 두 마리의 토끼사진을 게재하면서 한 마리의 토끼 안경에는 나선모양의 그림을, 또 다른 한 마리의 토끼 안경에는 투명하고 선명한 눈을 그려 넣고, "야후는 단어로 빙글빙글", "엠파스는 문장으로 바로바로"라고 표기하여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30일 이내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이 경쟁사업자 검색엔진의 검색성능이 자신의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 하고, "엠포스 1위 ... 아후는 6위 머물러" 라는 조선일보(2000. 3. 27.)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목에 붉은색으로 밑줄을 그어 광고, 검색엔진 성능에 대한 특정조사결과 및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경쟁사업자의 검색엔진 성능을 비방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7조 위반	

2001. 3.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동양매직(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351)	동양매직(주)가 2000. 10. 1.부터 10. 31.까지의 기간 중에 자신이 판매하는 가스오븐레지, 식기세척기 및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제공한 승용차등의 경품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를 초과하고, 소비자현상경품류로 제공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등 부당한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3.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에이원21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1588)	(주)에이원21은 2000. 10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일간스포츠신문 등 4개 신문에 다이어트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제품을 판매 및 반포함에도 자기의 상호를 표기하지 않고 "신동방메디스"라는 상호만을 사용, 마치 제조회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3.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상(주)의 거래거절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1443)	대상(주)는 자신의 대리점인 부전상회와 95. 4. 1.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대리점이 99. 6월분 미수금 1개월분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들에 비	◎ 거래거절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

2001. 3. 2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하여 타사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품공급을 중단하였으며, 68년경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상품 중 미원, 고추장 등 일부 상품에 대리점의 영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리점별로 비표를 표시,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매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하여 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조치를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위반</p>	<p>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 ×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p>

2001. 3. 3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 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1독점0265)</p>	<p>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9. 10월 한국전화번호부(주)가 종합적인 번호안내 서비스를 위해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전화번호부에 통합수록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1999. 11월 전화번호부는 자사고객만을 별도로 수록·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발행여부에 대한 합의를 보류하였고, "하나로통신(주)의 가입자를 사업자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통합수록"하고 "전화번호부를 피심인과 하나로통신(주) 공동명의로 발행"하자는 하나로통신(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로통신(주) 가입자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통합수록치 아니하는 등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p>한국전력공사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한 건 (2001독점0266)</p>	<p>한국전력공사는 배전설비를 제공함에 있어 전력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인 (주)파워콤에게만 상단조가선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주)파워콤 이외에 다른 통신사업자가 배전설비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파워콤의 통신망 사용여부를 (주)파워콤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하여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가스공사의 부당지원 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1독관 0226)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대하여 사원아파트를 무상 임대하고 사옥임대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총 222백만원에 상당하는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하였으며, 1998. 9월부터 2000. 11월 기간 중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를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40백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2001독관0209)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합의하여 사전에 수익계약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수익계약에 의해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한국건설관리공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으며, 1996년부터 17개의 휴게소·매점을 민간업체에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가격 결정시 판매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는 피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협의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4호 위반	◎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399백만 원
농업기반공사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1독관0213)	농업기반공사는 미호천Ⅱ지구 동부2-1공구, 서부3-1공구 토목공사 및 월야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토목·조경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부족·우천 등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치 아니하고, 또한 2000년 능제지구 등 4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산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수차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309백만 원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에 걸쳐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판매 안내

본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분기별로 수록한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을 발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1집

- 2000년도 1/4분기(2000. 1. 1 ~ 3. 31) 심결 수록. 823면 정도
- 2000년 4월 25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25,000원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2집

- 2000년도 2/4분기(2000. 4. 1 ~ 6. 30) 심결 수록. 875면 정도
- 2000년 7월 25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25,000원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3집

- 2000년도 3/4분기(2000. 7. 1 ~ 9. 30) 심결 수록. 1084면 정도
- 2000년 10월 31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38,000원, 비회원(사) 43,000원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4집

- 2000년도 4/4분기(2000. 10. 1 ~ 12. 30) 심결 수록. 631면 정도
- 2001년 1월 26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19,000원, 비회원(사) 24,000원

공정거래 관련 자료에 관한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02)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